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은빛요양원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 이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 2 조 (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은빛요양원의 소속 직원과 은빛요양원을 이용하는 모든 어르신들로 한다 .

제 3 조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 를 받아서는 안 되며 ,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1.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 차별 , 착취 , 학대 ,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 있는 권리
2.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 (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3.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시설 내 ·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우편 ,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7. 정치적 , 문화적 ,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8.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9.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11. 시설 입 ·퇴소 , 일상생활 , 서비스 이용 ,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제 4 조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①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1.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2.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3.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해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5.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 해야 한다.
7.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1.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3.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4.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5.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6.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책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7.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협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1.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2.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3. 목욕 ,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4.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
5.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④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1.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 대체할 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
3.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

⑤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1.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 질병과 치료 , 통신 ,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⑥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1.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⑦ 정치 , 문화 ,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1.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2.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3.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⑧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1.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2. 다만 ,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

⑨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 (예 : 건의함 , 운영 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2.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3.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주어서는 안된다

⑩ 시설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2.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 여가 ,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3. 시설 외부의 건강 , 사회 , 법률 ,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이 원활하도록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4. 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
5.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⑪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1.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 되며 ,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
2.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 ·수발 ,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
3. 노인이 의식주 , 보건의료서비스 ,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4. 노인의 권리 변화 ,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 의사결정과정에서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5. 생활노인의 권리 , 시설 입 ·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